

「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상하수도사업소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)

- 제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”를 “평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9조의2”를 “제30조”로, 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”를 “수돗물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수질관리 기술의”를 “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